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공동관리규정

2019. 3.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 공동관리규정

[시행 2019. 03. 05.]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실무협의회 내규 제1호, 2019. 03. 05.]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3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 044-203-4347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정책과), 044-205-5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등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이하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제1조의 각 부처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3. “협업부처”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주관부처를 제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4. “통합전문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각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연구기관”이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1. “협동(공동·위탁)책임자”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2. “세부과제”란 하나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13. “연구단”이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4.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3세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참여부처, 통합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4조(참여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주관부처로서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을 총괄·관리하며, 도로조명시설에 ICT, Io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통합운영체계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담당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업부처로서 도로조명에 ICT기술 접목을 통해 각종 도로·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스마트 도로조명 통신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업부처로서 교통사고·재난재해 예경보 대응체계 구축 및 사고 발생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개발을 담당한다.
4. 행정안전부는 협업부처로서 스마트 도로조명 기반의 재난정보 수집 및 사고인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 연계 및 실증 연구를 담당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예산 출연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통합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2장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실무협의회 및 통합전문기관

제5조(실무협의회의 목적) ① 주관부처는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연간 사업계획, 사업성과, 예산 등 총괄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기타 참여부처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본 실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각 부처 세부사업별 의결기구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통합전문기관) ① 실무협의회는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통합전문기관을 주관부처 산하 전문기관으로 정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통합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제안요청서의 검토 및 수정·보완, 통합공고
2.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및 운영, 관리, 평가, 활용
3.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출연금 관리 및 지급, 정산
4.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
5. 기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수행에 관하여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산·학·연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각 참여부처의 추천을 통해 실무협의회가 위촉한다.

-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⑤ 주관부처 담당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연구사업의 부서장을 공동 간사로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통합전문기관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연직 과장급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

③ 안건 심의·의결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해당과제 참여연구진, 해당과제 자문경력 등)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은 배제하고 심의·의결 시행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참여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통합전문기관)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통합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1조(예산의 신청) ①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추진·관리계획의 수립) ① 통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 추진·관리계획(이하 “사업 추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최종목표 및 소요기간, 소요예산
2.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 성과지표
3.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관리 및 활용전략 등 추진체계
4.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관련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통합전문기관은 사업 추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면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관연구기관) ①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
3.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보고
4.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일정, 방법, 성과 등 연구개발계획 조정 요청
5.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지원
6. 기타 해당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합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부처 소속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참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의 소유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르되, 동 사업의 실증과정에서 테스트베드 대상지역(지자체 등)에 적용한 시제품 등의 성과는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유·무형적 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처, 협업부처 및 통합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통합전문기관의 연구관리 및 예산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동관리규정의 변경 및 실효)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참여부처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최초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